

본 협회,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2월 23일(화) 대한상공회의소 2·3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병일 정책 국장을 초빙하여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도 회원정기총회에 이어 개최된 동 공정거래법 설명회에서는 김병일 국장이 지난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방향과 '99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 공정거래법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설명회에서 김병일 정책국장은 먼저 '99년 1월 6일 제199회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즉시 발효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제외하고 '99.4.1.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병일 국장은 먼저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소위 제좌추적권이라고 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신설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량계열사가 금융기관에 예약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고가로 매입하는 등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자금·자산 지원행위가 대부분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없이 동 지원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가 어려워 내부거래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실명법의 금융거래 비밀보호라는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극히 엄격한 요건하에 운용토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제도는 지역독과점이나 수요독과점 사업자 등과 같이 사전지정에서 누락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더라도 규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며 따라 현행 사전지정제도를 사후추정제도로 전환하여 개별사건의 조사시에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사후에 판단함으로써 이를 규율하고, 금융·보험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금융·보험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도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결합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즉, 기업결합시 기업의 효율성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경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부실기업인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예외인정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각종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기업결합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던 1회성 과징금 대신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업결합 신고의무위반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과의 합작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통한 외자유치 및 비주력사업부문의 분리·매각 등을 유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종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오던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순자산 대비 100%로 제한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최소 50%, 기존 상장자회사는 3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며,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석업 등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야에서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모든 사업자'로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지주회사의 신고기준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지주회사의 신고기간 및 절차와 금융지주회사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비금융보험회사의 유형, 일반지주회사가 예외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사업범위 및 요건 등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의 유형·기준을 명시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시장효율성을 제고토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과 기업결합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를 명시하여 범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차원에서 각종 보고 및 신고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개별기업 및 산업의 거래가 국내의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공정한 경쟁메커니즘과 현명한 소비자를 가진 국가는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21세기 신경제질서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채무보증의 완전 해소 등을 통한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유도하고,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등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약관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시책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1999년도

1) 동 지침의 전문은 공정경쟁 제42호('99년 2월) pp.25~32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김병일 국장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과 1999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공정위 조사기획과의 윤수현 사무관이 이번에 개정되어 2월 18일(목)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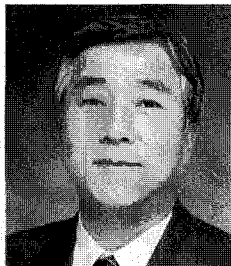
'96년도 말 자금·자산 등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되고 '97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행동지침 확립을 위해 '97년 7월말에 처음 제정·시행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98년 5월부터 실시한 부당지원행위 조사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과징금산정기준 등 판단기준의 구체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새로 개정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첫째,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자금·자산·인력별 지원행위의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등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이나 규제기준을 가급적 구체화하고, 둘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화하는 회사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등에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에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외원사 소개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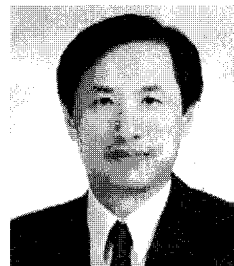


(주) 신세기통신

대표 정 태 기

정보통신업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주) 한국통신프리텔

대표 이 상 철

정보통신업

중구 서소문동 57-10번지